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기직제로 국방부에 국방인공지능 발전, 첨단무인전력체계 확대 및 획득제도 개선 등 국방첨단화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3명(5급 3명)을 증원하고, 수시직제로 국방부에 국방우주정책 및 전자기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하며, 국방부 과장급 직위를 일반직공무원에서 군인으로 변경함에 따라 과장급 인력 1명(4급 1명)을 감축하고, 군무원 채용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3명(6급 1명, 7급 2명)을 2명(6급 1명, 7급 1명)으로 정규화하며, 범정부 통합 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방부 인력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과 국립서울현충원 인력 1명(5급 1명)을 감축하고, 국방정책실 평가대상 조직 1개 과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기획조정실장과 국방정책실장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추가하는 내용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1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범정부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방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방홍보원 인력 1명(관리운영9급 1명) 및 국방전산정보원의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감축하고, 부서 역할의 명확화 및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방부 일부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사무를 각각 조정하며, 군 내 감염병 대응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감염병대응팀을 신설하고, 국정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5년 1

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면서 기존에 증원한 인력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10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2. 00. ~ 12.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6항 중 “정보통신기반정책담당관·사이버전자기정책담당관 및 소프트웨어융합팀장”을 “정보통신기반정책담당관 및 소프트웨어융합팀장”으로, “데이터정책담당관 및 사이버전자기정책담당관”을 “데이터정책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8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5항 중 “제38호”를 “제40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기본정책과”를 “국방전략과”로, “북핵대응정책과 및 미사일우주정책과”를 “북핵대응정책과·미사일우주정책과 및 사이버전자기정책과”로, “북한정책과장·미국정책과장”을 “북한정책과장·교육훈련정책과장·미국정책과장”으로, “기본정책과장·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장·교육훈련정책과장·정신전력문화정책과장”을 “국방전략과장·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장·교육훈련정책과장·정신전력문화정책과장”으로, “국제평화협력과장 및 다자안보정책과장”을 “국제평화협력과장·다자안보정책과장 및 사이버전자기정책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본정책과장”을 “국방전략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㉔ 사이버전자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방 사이버안보에 관한 정책 및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2. 국가 사이버안보 관련 유관부처·기관 간 협력
 3. 국방 사이버안보 업무에 관한 총괄 조정·통제
 4. 국방 사이버안보 전문인력 획득 및 관리
 5. 국방 사이버안보 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정책 수립
 6. 국방 사이버안보 분야 대미협력 및 다자협의체 운영
 7. 국방 사이버안보 분야 양·다자간 협력 및 발전
 8. 국방 사이버 위기관리 정책의 수립 및 위기관리기구의 운영
 9. 국가 사이버 위기대응 관련 정부부처·기관과의 협력
 10. 국방 전자기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관련 업무의 조정·통제
 11. 국방 전자기 분야 관련 정부부처·기관과의 협력 및 국제협력
- 제10조제6항 중 “군인연금과 및 군인재해보상과”를 “군인연금과·군인재해보상과 및 감염병대응팀”으로,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를 “기술서기관으로, 감염병대응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로 한다.
- 제10조제19항제8호 중 “군 감염병 예방,”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㉔ 감염병대응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 감염병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2. 군 예방접종 계획 수립 및 시행

3. 감염병 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시행

4. 코로나19 관련 국방부 대응체계 수립·점검에 관한 사항

5. 코로나19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대책본부 협력사항 등
범정부 대응지원 총괄에 관한 사항

6. 각 군 방역대책본부 등 관련 기관 업무의 조정·통제

제11조제13항에 제3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3의2.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국방·군사시설사업 계획의 승인

제11조제16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7항제6호를 삭제한다.

7. 국유재산의 매각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관계 행정기관 등과의 협의

8. 국방부 소관 유희 국유재산 가치향상 정책 연구,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개발 등에 관한 사항

제21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1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7”을 “36”으로 하고,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211”을 “214”로, 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임업주사·보건주사·환경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방호주

사·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164”를 “163”으로, 행정서기·공업서기·임업서기·방재안전서기·전산서기 또는 방호서기 “56”을 “55”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680”을 “681”로 하고, 일반직 계 “672”를 “673”으로 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7”을 “36”으로 하고,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212”를 “216”으로, 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임업주사·보건주사·환경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방호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164”를 “163”으로, 행정서기·공업서기·임업서기·방재안전서기·전산서기 또는 방호서기 “56”을 “55”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75”를 “74”로 하고, 일반직 계 “75”를 “74”로 하며, 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6”을 “5”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160”을 “159”로 하고, 일반직 계 “160”을 “15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20”을 “119”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42”를 “41”로 하고, 일반직 계 “42”를 “4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41”을 “40”으로 한다.

별표 5의2 및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국방부령 제974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2023년 10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감염병대응팀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감염병대응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감염병대응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보건정책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1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별표5의2]

국방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7조의2제1항 관련)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인사복지실 군인재해보상과	4명 (4급 1명, 5급 2급, 6급 1명)	2023년 9월 30일까지

[별표7]

국방부 공무원(군인제외) 한시정원표(제21조 관련)

1. 제21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5년 6월 30일)

총계	2
일반직 계	2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 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 ·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
행정주사보·사서주사보·공업주사보·임업주사보· 보건주사보·환경주사보·항공주사보·시설주사보 ·방재안전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

2. 제21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4년 3월 31일)

총계	2
일반직 계	2
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임업주사·보건주사 ·환경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	2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 ----- -----.
⑮ <u>사이버전자기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u>	<삭 제>
1. <u>국방 사이버안보에 관한 정책 및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u>	
2. <u>국가 사이버안보 관련 유관 부처·기관 간 협력</u>	
3. <u>국방 사이버안보 업무에 관한 총괄 조정·통제</u>	
4. 삭제	
5. <u>국방 사이버안보 전문인력 획득 및 관리</u>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u>국방 사이버안보 분야 대미 협력 및 다자협의체운영</u>	
9의2. <u>국방 사이버안보 분야 양·다자간 협력 및 발전</u>	
10. <u>국방 사이버안보 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정책 수립</u>	

11. <u>국방 사이버 위기관리 정책의 수립 및 위기관리기구의 운영</u>	
12. <u>국가 사이버 위기대응 관련 정부부처·기관과의 협력</u>	
13. <u>국방 전자기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관련 업무의 조정·통제</u>	
14. <u>국방 전자기 분야 관련 정부부처·기관과의 협력 및 국제협력</u>	
제9조(국방정책실) ① ~ ④ (생략)	제9조(국방정책실)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방위정책관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16호부터 제23호까지, 제31호 및 제36호부터 제3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 ----- ----- -----제40호----- -----.
⑥ 국방정책실장 밑에 정책기획과·기본정책과·북한정책과·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교육훈련정책과·정신전력문화정책과·국제정책과·미국정책과·동북아정책과·국제평화협력과·다자안보정책과·방위정책과·	⑥ ----- --- <u>국방전략과</u> ----- ----- ----- ----- ----- ----- -----

북핵대응정책과 및 미사일우주 정책과를 두며, 정책기획과장 · 북한정책과장 · 미국정책과장 · 방위정책과장 · 북핵대응정책과장 및 미사일우주정책과장은 영관급장교로, 기본정책과장 · 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장 · 교육훈련정책과장 · 정신전력문화정책과장 · 국제정책과장 · 동북아정책과장 · 국제평화협력과장 및 다자안보정책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⑧ 기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 10. (생략)

⑨ ~ ⑳ (생략)

<신설>

북핵대응정책과 · 미사일우주정책과 및 사이버전자기정책과-----
-----북한정책과장
· 교육훈련정책과장 · 미국정책과장-----

-----국방전략과장
· 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장 · 정신전력문화정책과장-----
-----국제평화협력과장 · 다자안보정책과장 및 사이버전자기정책과장-----

-----.

⑧ 국방전략과장-----

--.

1. ~ 10. (현행과 같음)

⑨ ~ ㉑ (현행과 같음)

㉑ 사이버전자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방 사이버안보에 관한 정책 및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2. 국가 사이버안보 관련 유관부처 · 기관 간 협력
3. 국방 사이버안보 업무에 관

한 총괄 조정 · 통제

4. 국방 사이버안보 전문인력 획득 및 관리

5. 국방 사이버안보 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정책 수립

6. 국방 사이버안보 분야 대미 협력 및 다자협의체 운영

7. 국방 사이버안보 분야 양 · 다자간 협력 및 발전

8. 국방 사이버 위기관리 정책의 수립 및 위기관리기구의 운영

9. 국가 사이버 위기대응 관련 정부부처 · 기관과의 협력

10. 국방 전자기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관련 업무의 조정 · 통제

11. 국방 전자기 분야 관련 정부부처 · 기관과의 협력 및 국제협력

제10조(인사복지실장) ① ~ ⑤ (생략)

⑥ 인사복지실장 밑에 인사기획관리과 · 인력정책과 · 병영정책과 · 인적자원개발과 · 군종정책과 · 군무원정책과 · 동원기획과

제10조(인사복지실장)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자원동원과 · 예비전력과 · 복지정책과 · 국방일자리정책과 · 보건정책과 · <u>군인연금과</u> 및 <u>군인재해보상과</u>를 두며, 인사기획관리과장 · 병영정책과장 · 군중정책과장 · 예비전력과장 및 복지정책과장은 영관급장교로, 인력정책과장 · 인적자원개발과장 · 군무원정책과장 · 동원기획과장 · 자원동원과장 · 국방일자리정책과장 · 보건정책과장 · 군인연금과장 및 군인재해보상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u>기술서기관</u>으로 보한다.	----- ----- -----<u>군인연금과</u> · <u>군인재해보상과</u> 및 <u>감염병대응팀</u> ----- ----- ----- ----- ----- -----<u>기술서기관</u>으로, <u>감염병대응팀장</u>은 <u>서기관</u> · <u>기술서기관</u> · <u>행정사무관</u> · <u>사서사무관</u> · <u>공업사무관</u> · <u>임업사무관</u> · <u>보건사무관</u> · <u>환경사무관</u> · <u>항공사무관</u> · <u>시설사무관</u> · <u>전산사무관</u> 또는 <u>방송통신사무관</u>으로 보한다.
⑦ ~ ⑮ (생략) ⑰ 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7. (생략) 8. <u>군 감염병 예방</u>, 식품 · 수질 검사 및 동물 진료 등에 관한	⑦ ~ ⑮ (현행과 같음) ⑰ ----- -----. 1. ~ 7. (현행과 같음) 8. 식품 · 수질 검사 및 동물 진료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정책의 수립 · 통제 9. ~ 14. (생략) ⑳ · ㉑ (생략) ㉒ 삭제	통제 9. ~ 14. (현행과 같음) ㉒ · ㉑ (현행과 같음) ㉒ <u>감염병대응팀장</u>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u>군 감염병 관련 정책의 수립 · 조정</u> 2. <u>군 예방접종 계획 수립 및 시행</u> 3. <u>감염병 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시행</u> 4. <u>코로나19 관련 국방부 대응 체계 수립 · 점검에 관한 사항</u> 5. <u>코로나19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영대책본부 협력사항 등 범정부 대응지원 총괄에 관한 사항</u> 6. <u>각 군 방역대책본부 등 관련 기관 업무의 조정 · 통제</u>
제11조(전력자원관리실장) ① ~ ⑫ (생략) ⑬ 시설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략) <신설>	제11조(전력자원관리실장) ① ~ ⑫ (현행과 같음) ⑬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u>국방 · 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국방 · 군사시설</u>

4.·5. (생 략)	<u>사업 계획의 승인</u>
6. <u>국유재산의 매각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관계 행정기관 등과의 협의</u>	4.·5. (현행과 같음)
7. <u>국방부 소관 유휴 국유재산 가치향상 정책 연구,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개발 등에 관한 사항</u>	<삭 제>
8. ~ 11. (생 략)	<삭 제>
⑭·⑮ (생 략)	8. ~ 11. (현행과 같음)
⑯ 부대건설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⑭·⑮ (현행과 같음)
1. ~ 6. (생 략)	⑯ ----- -----.
<신 설>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u>국유재산의 매각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관계 행정기관 등과의 협의</u>
제21조(한시정원) ① (생 략)	8. <u>국방부 소관 유휴 국유재산 가치향상 정책 연구,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개발 등에 관한 사항</u>
② <u>군무원 채용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u>	제21조(한시정원)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항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방부에 둔다.	③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국방부령 제974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국방부령 제974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의2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u>2023년 10월 31일까지</u> 존속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 ----- ----- <u>2025년 12월 31일</u>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

국방부 공무원(군인제외) 정원표(제16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	
•	•	•	
•	•	•	
일반직 계	•	•	
•	•	•	
•	•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u>37</u>	<u>36</u>	-1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임업사 무관·보건사무관·환 경사무관·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방재안 전사무관·전산사무관 • 방호사무관·방송통 신사무관 또는 기록연 구관	<u>211</u>	<u>214</u>	+3
행정주사·사서주사·공 업주사·임업주사·보 건주사·환경주사·항 공주사·시설주사·방			

재안전주사·전산주사 · 방호주사·방송통신 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u>164</u>	<u>163</u>	-1
행정서기·공업서기·임 업서기·방재안전서기 ·전산서기 또는 방호 서기	<u>56</u>	<u>55</u>	-1
·	·	·	
·	·	·	

[별표 1의2]

국방부 공무원(군인제외) 정원표(제1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680</u>	<u>681</u>	+1
·	·	·	
·	·	·	
일반직 계	<u>672</u>	<u>673</u>	+1
·	·	·	
·	·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u>37</u>	<u>36</u>	-1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임업사 무관·보건사무관·환 경사무관·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방재안 전사무관·전산사무관 · 방호사무관·방송통 신사무관 또는 기록연 구관	<u>212</u>	<u>216</u>	+4

행정주사 · 사서주사 · 공 업주사 · 임업주사 · 보 건주사 · 환경주사 · 항 공주사 · 시설주사 · 방 재안전주사 · 전산주사 · 방호주사 · 방송통신 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u>164</u>	<u>163</u>	-1
행정서기 · 공업서기 · 임 업서기 · 방재안전서기 · 전산서기 또는 방호 서기	<u>56</u>	<u>55</u>	-1
·	·	·	
·	·	·	

[별표 2]

국립서울현충원 공무원(군인제외) 정원표(제17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75</u>	<u>74</u>	-1
일반직 계	<u>75</u>	<u>74</u>	-1
·	·	·	
·	·	·	
행정사무관 · 임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전 산사무관	<u>6</u>	<u>5</u>	-1
·	·	·	
·	·	·	

[별표 3]

국방홍보원 공무원(군인제외) 정원표(제17조제2항 전단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160</u>	<u>159</u>	-1
일반직 계	<u>160</u>	<u>159</u>	-1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20</u>	<u>119</u>	-1
·	·	·	

[별표 4]

국방전산정보원 공무원(군인제외) 정원표(제17조제3항 전단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42</u>	<u>41</u>	-1
일반직 계	<u>42</u>	<u>41</u>	-1
·	·	·	
3급 또는 4급 이하	<u>41</u>	<u>40</u>	-1
·	·	·	